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

발의년월일 : 2000. 6. 22.

발 의 자 : 김제영 의원의 6인

1. 제안이유

우리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범위중 집행기관의 사회산업국이 2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어, 의안심사 등 동시에 출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조례안 등이 총무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조정과 소관업무와 적합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안 제2조).

- 「총무사회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명칭변경
-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명칭변경

나.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안 제3조).

- 총무위원회의 소관업무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

3. 관계법령

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총무사회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2호중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중 “총무사회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하고, 나목을 삭제하여,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제3호중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하고, 나목의 “사회산업국의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u>총무사회위원회</u> 7명</p> <p>2. <u>도시산업위원회</u> 8명</p> <p>3. 의회운영위원회 7명</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p> <p>1. <u>총무위원회</u> ---</p> <p>2. <u>사회도시위원회</u> ---</p> <p>3. -----</p>
<p>제3조(상임위원회직무와 그 소관) ①(생략)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총무사회위원회</u></p> <p>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나.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다. (생략)</p> <p>라. (생략)</p> <p>3. <u>도시산업위원회</u></p> <p>가.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나. 사회산업국의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다.(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p> <p>1. (현행과 같음)</p> <p>2. <u>총무위원회</u></p> <p>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삭제)</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3. <u>사회도시위원회</u></p> <p>가.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나.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다.(현행과 같음)</p>